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0- 18호

『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1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최근 늘어나는 저소득주민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고
- 나.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,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예산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(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-주 소 -성 명 -연락처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

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
2. “생활안정 지원”이란 생계, 주거,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
3. 그 밖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을 포함한 타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

제4조(지원내용)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
2. 위문금·품
3. 월동대책비
4.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·품 및 용역서비스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,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 조사) ① 군수·구청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

②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